



Heritage Policy FOCUS

2023 통권 제1호

Issue. 1

국가유산 체제의
의미와 과제

Issue. 2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성 논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Institute

Heritage Policy

FOCUS

2023
통권 제1호

INDEX

Issue. 1

국가유산 체제의
의미와 과제

Issu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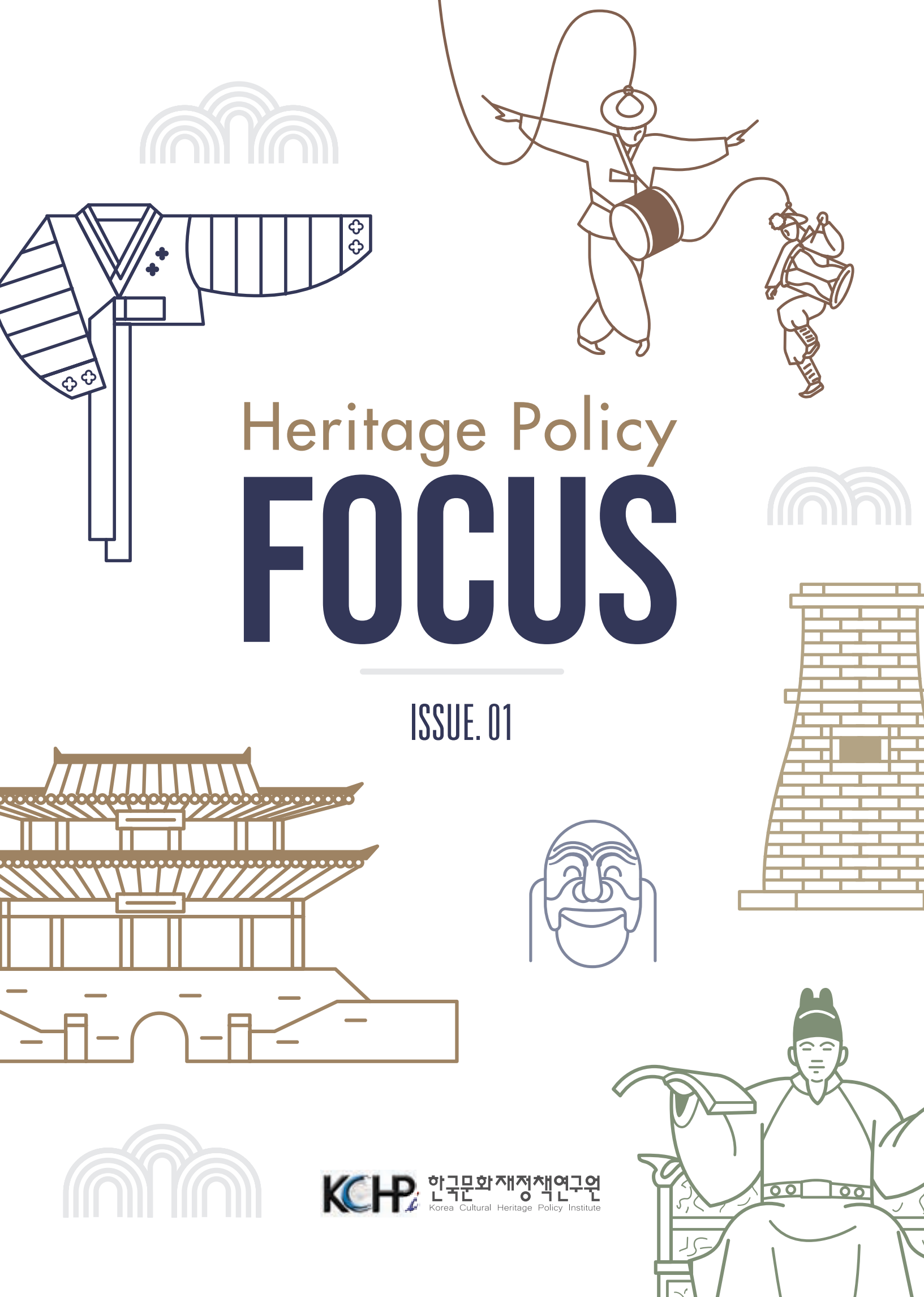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성 논의

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원 동향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Institute



Heritage Policy FOCUS

ISSUE. 01

국가유산 체제의 의미와 과제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재’란 용어와 함께 ‘문화유산’ 또는 ‘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무형(문화)유산’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문화재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문화재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이란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자국의 유산을 총칭하는 문화재란 용어가 처음으로 법정화되었다. 일본은 1949년 법률사 화재로 금당벽화가 소실되는 사태를 계기로 통일법규 제정의 필요에 따라 종래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주요미술품등에관한법률’(1933년)을 통합하여 모든 보호 대상을 포괄하는 용어로 ‘문화재’를 제시하고, 문화재의 범주에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매장문화재 등을 포함시켰다. 이 때 사용된 문화재란 용어는 문화적 재화를 뜻하는 독일어 ‘Kulturguter(Kultur, 문화 + Guter, 재화)’를 한자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여 1960년 11월 10일 문화재보존위원회 규정 제정, 1961년 10월 2일 문화재관리국 직제 신설,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재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대의 문서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1954년 헤이그에서 체결된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과 1970년 유네스코 제16차 총회에서 의결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 범주를 보면 문화재란 ‘어떤 민족 또는 국가에서 역사적·예술적·과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산물과 작품, 자연물’까지 포괄하는 방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 속에는 순수한 의미의 가치적 중요성과 함께

다분히 ‘재산’이라는 재화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간취된다. 이렇듯 국제규범의 용어상 문화재(property)는 근대적 사적 소유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공공의 개념으로 발전한 유산 중 다분히 ‘동산유산’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으며, 후술할 유산 또는 문화유산이란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재산적 의미의 문화재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1972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의 제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이하 세계유산 협약)〉이 1975년부터 정식 발효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이 세계유산협약을 통해 ‘유산’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을 명확히 분리하였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가 주가 되고, 자연유산은 자연의 형태, 지질학적 생성물과 동식물 서식지, 가치가 있는 지점이나 자연지역을 포괄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의 경우 ‘복합유산(Mixed Heritage)’이란 용어도 추가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동산유산 중심의 재산 즉, 재화적 가치에 한정되었던 문화재의 개념을 확대하여 “인류의 문화 활동에 의한 소산물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과학상·보존상·경관상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아울러 유네스코에서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여 문화유산과의 차별을 도모하였다.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제32차 정기총회에서 190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1항에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practices), 표출(representation), 표현(expression),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cultural spaces)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이란 용어가 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문화재란 용어가 법률적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9248호, 일부개정 2023.03.21.)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각 호에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로 나누어 문화재의 대상과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1962년 최초 제정 당시의 문화재보호법은 “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서술하고, 다음 각 호에서 1.유형문화재, 2.무형문화재, 3.기념물, 4.민속문화재를 따로 설명하였다. 그랬던 것을 1999년 문화재보호법 개정(1999.01.23.)을 통해 현행 법률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새롭게 문화재를 정의하였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문화재 개념 속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유산’이란 용어 또한 명기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1972년 세계유산협약의 유산 개념 자체는 물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구분까지도 그때 이미 이루어졌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화재 개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용어에 대하여 도입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사전적 의미의 국어학적 해석으로 인해, 보편적으로는 문화재의 의미가 재화의 성격이 강한 협소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령상의 문화재 개념과 실제 국민 인식상의 편차를 극복하고 실제로 모든 유산을 총칭하는 명칭으로서의 문화재 용어 개선이 절실하게 여겨진다. 또한, 문화재란 용어가 문화적 소산으로 한정되면서 자연적 소산인 자연유산과 재화적 성격과 맥락을 달리하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문화재의 분류 체계 등에 있어서도 폐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분류 체계는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분류 체계가 그대로 원용되었고, 1962년 처음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래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유형을 분류하는 첫 단계에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대분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병행하여 기념물과 민속문화재가 같은 단계로 분류되어 있어, 유형 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 기념물은 유형문화재로, 민속문화재는 그 대상에 따라 유형 및 무형문화재에 각기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등위 분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기념물’이 과연 적합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 상에는 기념물에 대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하위 개념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뿐 기념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문화재 분류 체계와 지정 명칭 간의 상이성, 위계의 혼재로 인해 문화재에 대한 인식 자체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분류 체계와 지정 명칭 등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유산이란 용어의 대두로 이미 문화재와 혼용되고 있는 바, 시대 변화에 기반한 문화재의 개념 재정립과 분류 체계의 합리화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국제협약의 기준이 되는 유네스코 유산 분류 체계를 원용하되, 유산의 형태와 속성, 관련 소관 법률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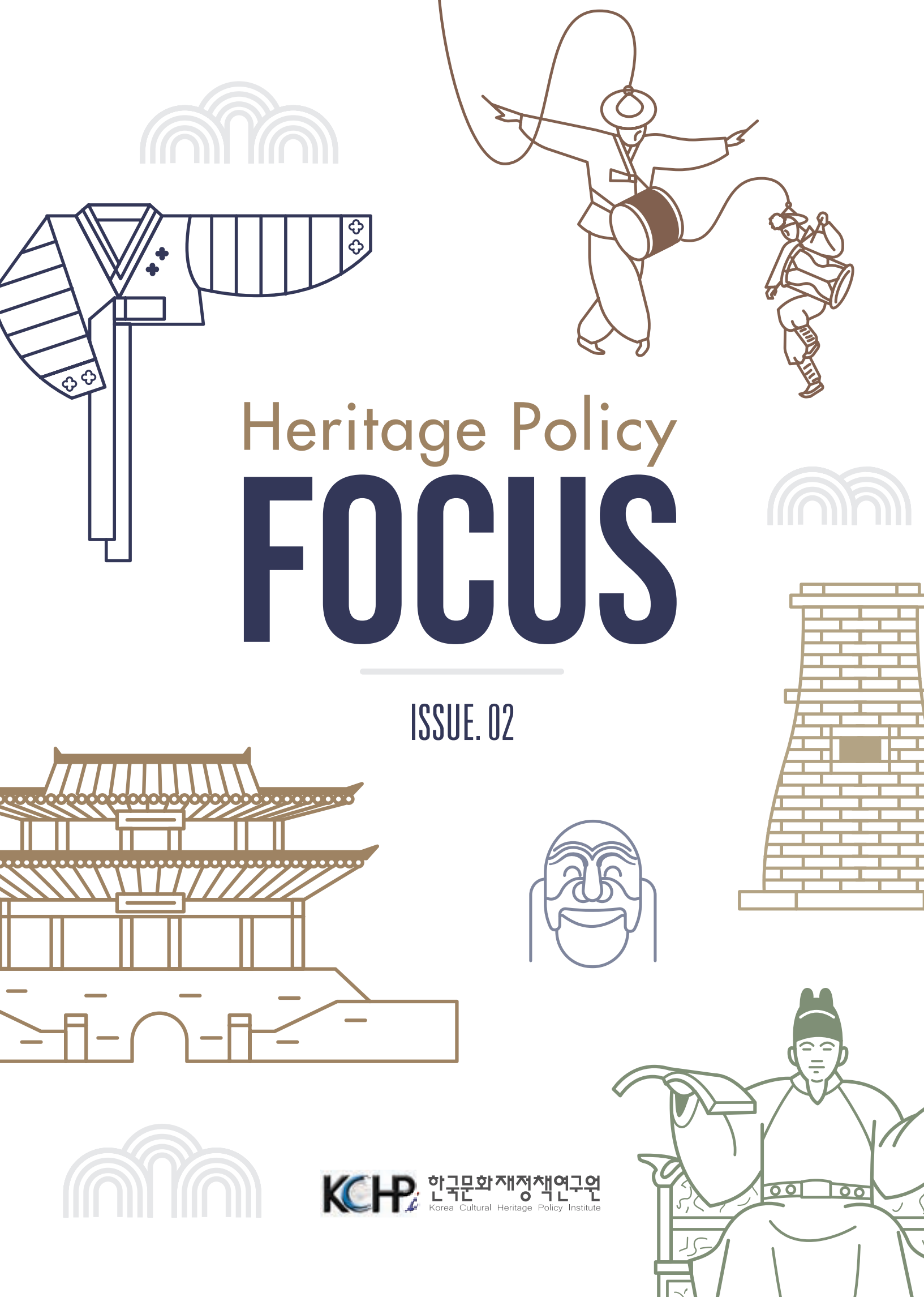
고려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대분류를 설정하고, 이 세 범주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서 ‘국가유산’이란 개념이 대두되었다.

국가유산이란 개념에는 국가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의미와 포괄적 의미의 유산이란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하는데 적합한 개념이라 생각된다. 국가유산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고, 대한민국 헌법상 ‘문화국가’의 실현 원리에도 부합되는 개념이다.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미래로 물려주어야 할 국가의 책임성이 강조됨은 물론이고 국제적 대응과 협력에도 유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재 명칭 개선 및 국가유산의 개념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문화재 분야 제1호 과제로 선정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행히 2022년 9월 의원 입법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을 발의하여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급기야 2023년 5월 16일 법률 제 19409호로 제정되어 내년 5월 1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 개념 도입과 함께 대비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가유산이란 큰 틀 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대분류 아래 각 유형별 하위 분류 체계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국가유산과 시도유산의 관계 정립 및 정합성을 구축하기 위한 체제 개편과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의 포괄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수반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문화재 행정 60년이 지나서야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향후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Heritage Policy FOCUS

ISSUE. 02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성 논의

전인석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1 기후위기 전망 및 문화유산 피해

1) 세계 기후위기 전망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이하 IPCC)’에 따르면, 2011년~2020년 기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IPCC, 2021), 2040년 이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PCC, 2023). IPCC는 기존 기후위기 시나리오인 RCP 8.5에 해당하는 기후위기 결과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1] RCP 기후위기 시나리오

종류	의미	CO ₂ 농도	전지구 기온 (21세기말)
RCP2.6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 수행	420ppm	+1.3℃
RCP4.5	온실가스 저감정책 상당히 실현	540ppm	+2.4℃
RCP6.0	온실가스 저감정책 어느 정도 실현	670ppm	+2.7℃
RCP8.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	940ppm	+4.0℃

출처: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2023), <https://www.weather.go.kr>

- 기후위기는 기온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 및 상승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인데, 1901~2020년 사이 지구 해수 온도가 0.91℃ 상승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1901~2018년 사이 지구 해수면 높이가 0.2m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후위기에 따른 문화유산 피해 사례 및 대응 동향

-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역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문화유산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겪는 중이며, 호주 대보초(산호초)의 경우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백화 현상이 발생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2] 기후위기에 따른 문화유산 피해 사례



- 이러한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에 대응하고자 각국 정부 및 주요 기구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기후위기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대응

구분		세부 동향
국가	미국	NPS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따른 문화자원 관리 방안 구축(기후위기 영향과 정보 연계, 모니터링, 교육, 협업 및 공유 등)
	영국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22를 통한 문화유산 기후위기 당면 과제로 유적지 침수, 경관위협, 해충 등의 위험요소 제시
	이탈리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이탈리아 국가 전략’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요인과 회복력을 위한 조치(훈련, 재료연구, 다중 위험 시나리오 기반 미래 시나리오 설립 등) 제시
기구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2007년 ‘기후변화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문서’ 채택
	ICOMOS	2017년 파리 협약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기후위기 보고서 작성 등 연구 진행
	ICCROM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 현장 행동지침, 매뉴얼 수립 등 활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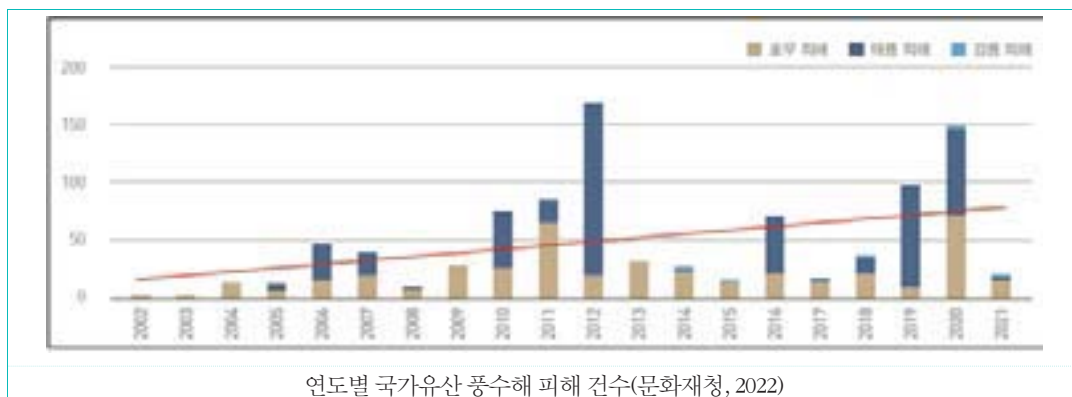
2 국내 기후위기 전망 및 국가유산 피해

1) 국내 기후위기 전망

- 전 세계적 기후위기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 8월 수도권 및 영서지역 대폭우는 서울 기상관측 사상 1시간 강수량 최고 기록을 경신(시간당 141.5mm)했으며 2022년 9월,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초로 해양이 아닌 북위 25도선 이북 바다에서 슈퍼 태풍인 힌남노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3년, 올해 역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동해안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양간지풍(襄杆之風)이 평년 25m/s를 넘어 35m/s까지 관측되었다.
- 국내 연평균 기온은 1991~2020년을 기준으로 과거(1912~1940) 대비 1.6℃ 상승하고 연강수량의 경우 증가하였지만(135.4mm) 강수일수는 21.2일 감소하여 강수강도가 높아지는 등 향후 국내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기후위기에 따른 국내 국가유산 피해사례

-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풍수해를 비롯한 병충해 등의 국내 국가유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풍수해의 경우,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국가유산 피해건수가 총 979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장 많은 피해는 태풍(522건)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호우(447건), 강풍(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풍수해 외에도 흰개미 등 해충에 따른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흰개미 피해는 지정문화유산 362건 중 317건에서 나타나 향후 목조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의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 구상나무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폐사되는 등의 피해가 점차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수도권 폭우로 인한 문묘 은행나무 피해(문화재청, 2022)



2022년 태풍 힌남노에 따른 경주 서악동 고분군 토사 유실(TV조선, 2022)

3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성

1)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가유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요인뿐만 아니라 복원 개입을 위한 피해모델 구축을 위한 정량적 요인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문화유산 구성 재료에 있어 분해요인 중 물의 주된 영향, CO² 농도 증가에 따른 탄산염 석재의 화학적 용해, 강풍과 열 노출에 따른 문화유산 재료 내부 응력 값 추이 등을 연구 중이다.
- 국가유산과 관련된 과학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 시나리오 및 구체적 대응 방안, R&D 분야 강화 등 대응 방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원을 통한 데이터 취합 및 연구를 통한 국가유산 맞춤형 진단 모델 등의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2) 기후위기에 따른 국내 국가유산 피해사례

-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계하여 국가유산 기후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위기 관련 취약유산을 선정,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내 문화유산 보존체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연유산 관리 방안 강화

- 국가유산 기후위기 관련 가장 취약한 대상은 자연유산으로 판단되는데 대표적으로 제주 구상나무, 연천 은대리 물거미 등 자연유산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자연유산에 대한 관리 방안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자연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립자연유산원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연구, 유전자원 수집·보존 등의 업무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앞선 데이터베이스 및 모니터링 강화와 유기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Heritage Policy

FOCUS

2023
통권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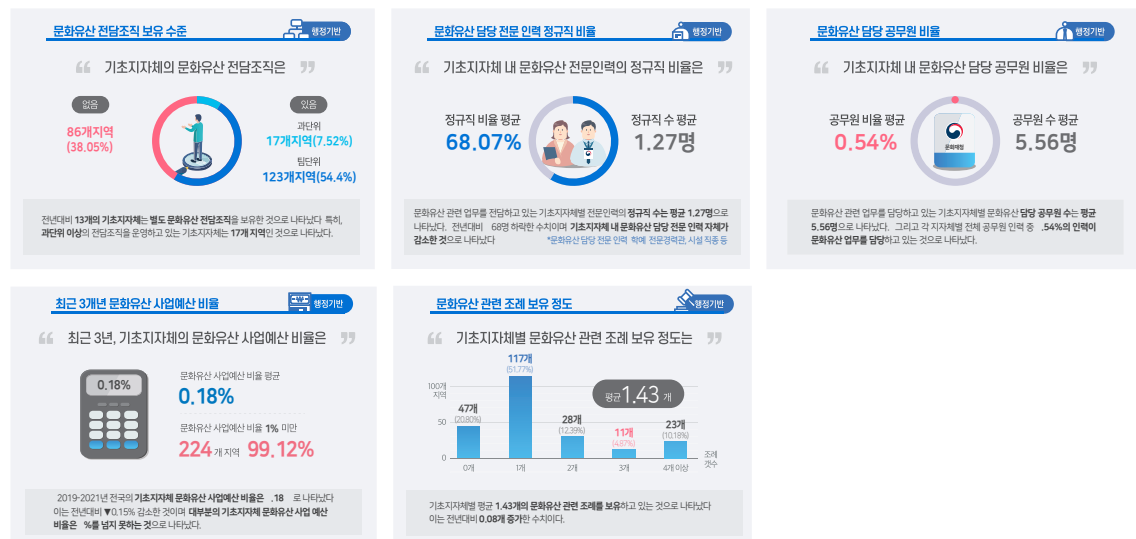
문화유산 정책 동향

문화유산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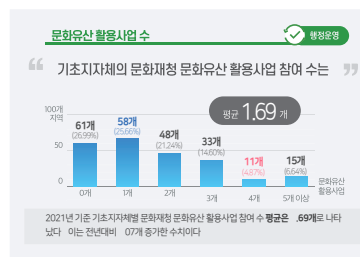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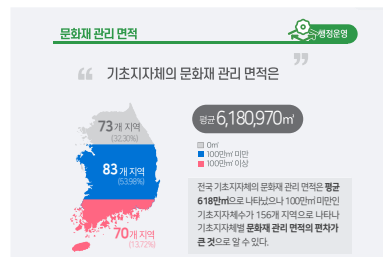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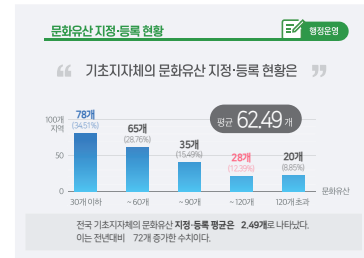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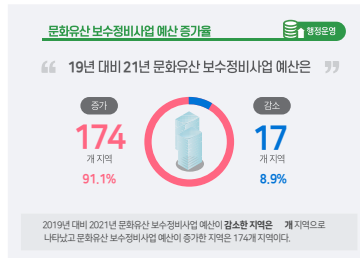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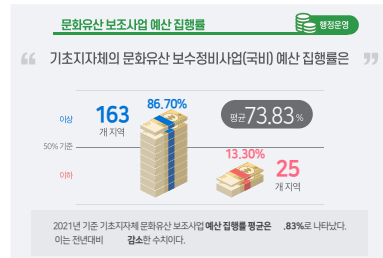
기초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현황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진단연구」를 실시하여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일선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구축,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한눈에 보는 2022년 기초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현황
 - 2020~2021년 말 기준으로 취합한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별 문화유산 관리역량을 분석하였다.
 - 각 기초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현황은 크게 행정기반, 행정운영, 행정역량, 거버넌스의 4가지 범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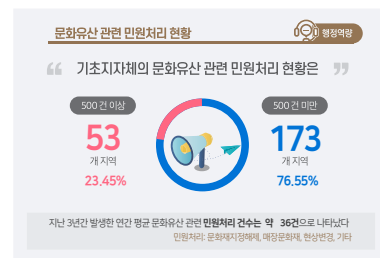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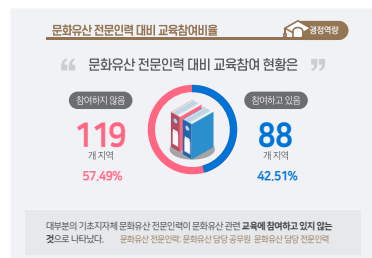
행정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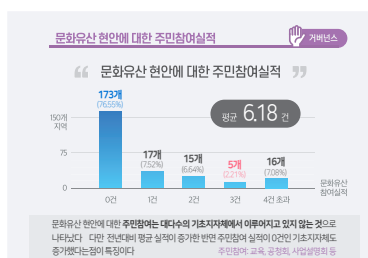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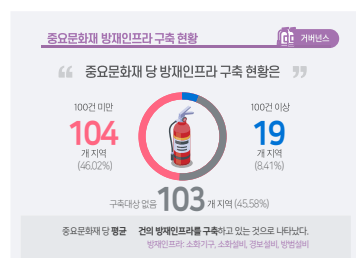
행정운영



행정역량



거버넌스



Heritage Policy

FOCUS

2023
통권 제1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동향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동향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성과공유회 - ‘문화유산 정책연구의 나아갈 길’” 성료

2023년 3월 23일(목),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성과공유회가 「문화유산 정책연구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성과공유회는 2022년 문화재 정책연구의 성과를 돌아보고, 문화정책 등 유관 분야의 이슈 탐색 및 협업 가능성 검토를 통해 미래 문화유산 정책연구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지난 연구원의 연구 성과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이은하 원장, 제31대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 연임”

2023년 5월,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여 문화재위원 100명과 문화재 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였다.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 궁능문화재 분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관련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은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제30대 문화재위원회부터 민속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번 임기는 오는 2025년 4월 말까지이다.



제31대 문화재위원회 모습(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제1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개최

2023년 6월 30일,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정책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국가유산 정책포럼은 2023년 5월 16일자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로 전환해나가는 시점에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차 국가유산 정책포럼에서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회사 후,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방향’ 및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인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주재하에 김태식 연합뉴스 선임기자, 엄원식 전국학예연구회 회장, 이광표 서원대학교 교수,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조홍석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전문위원, 진병길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회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향후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네 차례 더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Heritage Policy

FOCUS

2023
통권 제1호

- ✔ Heritage Policy Focus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Heritage Policy Focus의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 Heritage Policy Focus를 이용하실 경우, 한국문화재정책연구소의 동의를 반드시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Institute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가길 18-1, K-heritage빌딩 4층
Tel 02-3156-1100 FAX 02-3156-1199